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동포역량지원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직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24. ~ 6.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류협력국장**”을 “**교류협력국장 및 동포역량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포역량지원관은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 제11호에서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류협력국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재외동포협력총괄과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 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를 “**재외동포협력총괄과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 차세대동포정책과 · 동포경제지원과 · 동포인재육성과 · 차세대동포연수과 · 동포유산보존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 · 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을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 · 차세대동포정책과장 · 동포경제지원과장 · 동포인재육성과장 · 차세대동포연수과장 · 동포유산보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망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0.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3호 중 “**교사**”를 “**교사·재외동포 한국어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세대 동포과장**”을 “**차세대동포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를 “**해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세대 재외동포 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⑨ 동포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인재육성 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한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한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재외동포 모국 장학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현지 장학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7. 장학생 통합 DB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⑩ 차세대동포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
2.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 참가자 DB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성과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초청 연수 관련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⑪ 동포유산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및 유산 등의 수집·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 재외동포 관련 전시 기획 및 운영
4.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5.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내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고려인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별표 1 중 총계 “154”를 “190”으로, 일반직 계 “105”를 “141”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2”를 “3”으로, 서기관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및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영사직공무원 “5”를 각각 “8”로,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영사직공무원 “12”를 “23”으로, 행정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9”를 “17”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21”을 “28”로, 행정서기 “1”을 “3”으로, 행정서기보 “4”를 “5”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류협력국) ① <u>교류협력국</u>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u><신 설></u>	제8조(교류협력국) ① <u>교류협력국</u> <u>장 및 동포역량지원관</u> ----- ----- ----- -----.
② <u>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u> <u>총괄과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u> <u>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u> <u>과를 둔다.</u>	② <u>동포역량지원관은 「재외동</u> <u>포청 직제」 제10조 제11호에서</u> <u>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류협</u> <u>력국장을 보좌한다.</u>
③ <u>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u> <u>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u> <u>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u> <u>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u> <u>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u> <u>장 · 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u> <u>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u> <u>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u> <u>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u>	③ ----- <u>재외동포협력</u> <u>총괄과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u> <u>차세대동포정책과 · 동포경제지</u> <u>원과 · 동포인재육성과 · 차세대</u> <u>동포연수과 · 동포유산보존과</u> -- --. ④ ----- ----- ----- ----- ----- <u>동포교육문화지원과</u> <u>장 · 차세대동포정책과장 · 동포</u> <u>경제지원과장 · 동포인재육성과</u> <u>장 · 차세대동포연수과장 · 동포</u> <u>유산보존과장</u> -----

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재외동포 정치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9.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0. (생략)

⑤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4. · 5. (생략)

⑥ 차세대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장학 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

3. · 4. (생략)

<신설>

-----.

⑤ -----.

1. ~ 7. (현행과 같음)

8. 유망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삭제>

10.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⑥ -----.

1. · 2. (현행과 같음)

3. ----- 교사 · 재외동포 한국어 교원 ---

4. · 5. (현행과 같음)

⑦ 차세대동포정책과장-----.

1. 차세대 재외동포 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5.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

5.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
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생략)

⑦ (생략)

<신설>

<신설>

항

6. 해외 -----

--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동포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인재육성 정책 수
립·시행 및 관련 법령의 운
영

2.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한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한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재외동포 모국 장학사업 집
행에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현지 장학사업 집
행에 관한 사항

7. 장학생 통합 DB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
항

⑩ 차세대동포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
 2.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 참가자 DB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성과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초청 연수 관련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 ⑪ 동포유산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및 유산 등의 수집 · 관리 · 보존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 재외동포 관련 전시 기획 및 운영
 4.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5.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내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고려인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신 · 구 정원 대비표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54</u>		<u>190</u>	+36
	.		.		.	
	.		.		.	
일반직 계			<u>105</u>		<u>141</u>	+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u>2</u>		<u>3</u>	+1
서기관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u>5</u>		<u>8</u>	+3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 · 영사직공무원			<u>5</u>		<u>8</u>	+3
행정사무관 또는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 · 영사직공무원			<u>12</u>		<u>23</u>	+11
	.		.		.	
	.		.		.	
행정주사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u>9</u>		<u>17</u>	+8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	<u>21</u>	<u>28</u>	+7
·	·	·	
·	·	·	
행정서기	<u>1</u>	<u>3</u>	+2
·	·	·	
·	·	·	
행정서기보	<u>4</u>	<u>5</u>	+1
·	·	·	
·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3명 (9등급 1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5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5명, 7급 8명)	2028년 3월 31일까지
2. 재외동포정책국 미주유럽동포과	6명 (8등급 1명, 7등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3. 재외동포정책국 아주러시아동포과	7명 (8등급 1명, 7등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4. 교류협력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5. 교류협력국 동포역량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6. 교류협력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14명 (8등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2명, 7급 4명, 8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7. 교류협력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9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8.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정책과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9.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10. 교류협력국 동포 인재육성과	1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 명, 6급 5명, 7급 2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1. 교류협력국 차세 대동포연수과	10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 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
12. 교류협력국 동포 유산보존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 명, 8급 1명)	2029년 6월 30일까지